

제 589 호  
1977.2.8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
편집 : 문화공보관 조 용 하  
전화 75 - 788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5 - 5444

# 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1140호 서울특별시 피입약제 및 기구의 보급수수로  
징수조례..... 3

◎ 고 시

제 23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 및 변경..... 4  
제 25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..... 5  
제 26 호 사회단체등록취소고시..... 5

◎ 공 고

제 26 호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취소..... 6  
제 27 호 서울특별시 소방서장인 개각공고..... 7  
제 28 호 환지계획 변경인가및 환지에정지지정공고..... 8

-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- 2.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요격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계	보도계장	공보계장	문화공보관	공보관
최	동	하	하	림

**조**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시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징수  
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77.2.8
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140 호

서울특별시 피임약제 및 기구의  
보급수수료징수조례

서울특별시·먹는 피임약 보급수수  
로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 목적 ) 이 조례는 피임약 및  
기구의 보급에 대한 수수료(이하  
"수수료"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한  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 보급량 및 수수료 ) ① 피임  
약 및 기구의 1인당 1개월분  
보급량과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 
같다.

- 1. 먹는 피임약 ( 21정 또는 28정입 1싸이클 ) : 50원

2. 콘돔 ( 6개입 1갑 ) : 20원

② 생남보호법 제 3 조 제 1 항에 해당  
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 
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 3 조 ( 수수료의 징수위탁 및 봉입 )

① 수수료는 피보급자의 관할 보건소  
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 
수수료는 지체없이 시 금고에 봉입하  
여야 한다.

제 4 조 ( 수수료의 재활용 ) 수수료는

이를 재원으로 가족계획사업에 재활  
용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 규칙 ) 이 조례의 시행에 관  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( 시행일 ) 이 조례는 공포한  
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 조례 폐지 ) "서울특별시 먹는  
피임약 보급수수료 징수조례"는  
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 
지한다.

고 시
-----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3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 
지적승인 및 변경

1. 건설부로 부터 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 및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

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77.2.4

서울특별시강

○ 도로 지적승인 및 변경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
신설	대로	3 류	97	25m	380m	난지도 (중 1-138)	난지도 (중 1-124시점)
"	중로	1 류	138	20 "	2,900 "	" (대 3-97)	삼암동 496-106
"	"	2 류	104	15 "	2,600 "	" (대 3-97)	" -129
기정	광로		5	50-60 "	740 "	제 1 청계교	제 2 청계교
변경	"		"	"	"	"	"
기정	"		38	40 "	120 "	남대문로 1가 14	남대문로 1가 20
변경	"		"	"	"	"	"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5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제 14 호 ('77.1.31) 로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따라

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77.2.7  
서울특별시장

○ 도로지적승인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내로	1	36	35m	700m	남산3호터널 용산동축입구	중 3-19 (용산동 2가)	
변경	"	2	49	30"	"	"	"	터널접속도로 폭원 축소
기정	대로	3	7	25"	2,000m	노량진본동 (광장제25호)	대 1-21 (국립 묘지앞)	
변경	"	1	43	35"	"	"	"	전구간폭원확장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

사회단체등록취소고시

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제 8 조

1 항 제 2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회단체의 등록을 취소하였기 동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1977.2.8  
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

가. 내 상 단 체

등록번호	단 체 명	대 표	소 재 지	취 소 사유
69	세계화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지부	박종규	종로구 당주동 2-2 (영진빌딩 202)	정기보고 2회이상 불이행

공 고
-----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6 호

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

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8 조 및  
동법시행령 제 18 조 제 3 호의 규정에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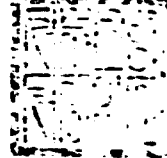
의거, 다음 업체에 대하여 전기용품  
제조업허가를 취소하고, 동법 제 26 조  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
1977.2.4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업 체 명	대 표자	허가번호	소 재 지	취 소 사유
내신공업사	조백운	1-8-44	영등포구 신정동 159-9	법정기간내에 형식승인 미취득

<p>○서울특별시공고제 27 호</p> <p>서울특별시소방서장인계 각공고</p> <p>관인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공인을 개각하였기 다 음과 같이 공표한다.</p>		<p>1977.2.4</p> <p>서울특별시</p> <p>1. 공인사용일시</p> <p>77. 2.10 부터</p> <p>2. 공인의 인영</p>
중부소방서	성동소방서	용산소방서
		
영등포소방서	목부소방서	서부소방서
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 호

환지계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지정  
공 고

1. 서울특별시 경인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한 환지 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9 호( 77. 1. 18. )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동법 제 47 조와 행정적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에 따라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기 공고한다.
2. 환지에정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3. 조서송달은 별도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할 것이나 미수행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서 가름한다.

1977. 2. .

서울특별시장

- 1) 사업명 :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
- 2) 변경내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정동, 신월동 일부토지
- 3) 필지수 : 18 필지
- 4) 변경조서 및 도면 : 상락 (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비치)